

인천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2가단20886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인천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근배

피고 1. A 주식회사

2. B

3.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

변론 종결 2023. 7. 20.

판결 선고 2023. 8. 10.

주 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621,010원 및 그 중 90,954,642원에 대하여 2022. 11. 12.부터 2022. 12. 13.까지 연 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과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6. 1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98,621,01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3.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B에게 피고 C 주식회사가 대한민국(소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의 배당금지급채권 중 98,621,010원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연대보증, 대출

1) 원고는 2012. 7. 25. 및 2018. 9. 5.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A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될 대출금반환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보증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이에 기한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고,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A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보증서 번호: E보증일: 2012. 7. 25.보증금액:
45,000,000원보증상대처: 중소기업은행
남동공단지점보증기한: 2022. 7. 15.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보증서 번호: F보증일: 2018. 9. 5.보증금액:
45,000,000원보증상대처: 중소기업은행
남동공단지점보증기한: 2022. 9. 2.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채무자 본인(피고 A)과 연대보증인(피고 B)은 원고에게 그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연 7%)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기타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법적 절차비용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 A는 위 각 신용보증서에 기재 중소기업은행 남동공단지점으로부터 2012. 7. 25.경

50,000,000원, 2018. 9. 5.경 50,000,000원을 각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1) 피고 A는 2021. 8. 31.부터 이 사건 각 대출금에 관한 이자를 연체하였고, 원고는 2021. 9. 6.경 중소기업은행 남동공단지점으로부터 '이 사건 각 대출과 관련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다.

2) 위 은행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에 대한 보증금액의 이행을 청구함에 따라 원고는 2022. 1.

11. 위 은행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과 지연이자 합계 90,954,64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한편, 위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2022. 1. 11.부터 2022. 11. 11.까지의 지연손해금 5,320,223원,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해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2,346,145원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 B, C 주식회사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피고 B는 2021. 6. 16. 피고 A와 거래관계에 있던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A,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B의 채무초과 상태

피고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282,567,193원¹⁾ 상당 이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채무)으로 G 주식회사 21,458,957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2,168,151원, H 주식회사 50,000,000원, 중소기업은행 198,246,046원, 한국무역보험공사 81,000,000원, I 주식회사 36,220,711원, 신용보증기금 240,369,715원, 피고 C에 대한 물품대금 421,941,441원, 원고에 대한 구상금 87,300,000원 합계 1,148,705,021원의 각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 진행경과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 8.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어 이 사건 부동산이 606,750,000원에 매각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2) 2022. 7. 19.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3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C에게 229,401,574원을 배당(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어 확정되었으나, 원고의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인천지방법원 2022카단104371호)으로 인하여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배당금은 대한민국(소관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 공탁되었다.

[인정근거]

- 피고 A,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법원 등기전산정보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에 대한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원리금 합계 98,621,010원(= 대위변제금 90,954,642원 + 지연손해금 5,320,223원 + 법적절차비용 2,346,145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90,954,642원에 대하여 2022. 11. 1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인 2022. 12. 13.까지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연 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할 것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될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는 아직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 이전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그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이후 피고 A가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점, ③ 그 후 원고가 위 신용보증사고 발생으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합계 90,954,642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실제 취득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 98,621,010원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다4730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피고 B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피고 A의 물품대금채권자인 피고 C에게 물상담보로 제공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채무자인 피고 B에게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할 경우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이 더욱 심화되어 일반 채권자의 채권 변제가 어려워진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그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 B은 피고 A와 피고 C간의 지속적인 거래관계에서 회사운영에 필요한 염료를 계속 공급받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기존 미수금채무와 더불어 장래 발생할 염료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 C에 제공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처로부터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업의 계속 추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존 채무를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시켰다면 그 부분에 관하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이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에 기존 채무가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채무를 위한 담보설정과 물품을 계속 공급받기 위한 담보설정이 불가피하게 동일한 목적 하에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졌고, 당시의 여러 사정 하에서 그것이 사업의 계속을 통한 회사 갱생이라는 목적을 위한 담보제공행위로서 합리적인 범위를 넘지 아니한 때에는 기존 채무를 위한 담보설정행위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다22831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C이 제출한 을다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 A는 염료제조 및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8.경부터 2021. 7.경까지 피고 C으로부터 염료를 공급받는 계속적 거래를 하여 온 사실, ② 피고 C은 피고 A의 물품대금 미수금액이 늘어날 때마다 피고 B에게 지속적으로 위 물품대금채무에 대한 담보제공을 요구하였고 이에 2009. 12.경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21. 6.경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피고 B 및 그의 가족들 소유의 재산이 위 물품대금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사실, ③ 피고 B은 2019. 7. 16.경 피고 A의 피고 C에 대한 거래상 모든 채무에 대해 연대 보증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 A의 사업 계속 추진과는 관계가 없는 피고 A의 피고 C에 대한 기존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피고 B이 피고 A의 사업 계속을 통한 회사 갱생이라는 목적을 위한 담보제공행위로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체결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가) 피고 A는 2021. 5.경까지 피고 C으로부터 연료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일부씩 계속 지급하여 왔음에도 미수금이 계속 늘어나면서 2021. 5.경 당시 물품대금 미수금이 합계 421,941,441원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 B은 2021. 6. 16. 피고 C의 요구로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상당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위 채권최고액은 기존 미수금채무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어서 기존 채무의 담보 외에 향후 연료거래로 발생하는 물품대금채무까지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그런데, 피고 C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이후 피고 A에게 2021. 6.경 3,619,000원, 2021. 7.경 6,776,000원 등 2차례에 걸쳐 합계 10,395,000원 상당의 연료만 공급한 후 2개월여 만에 피고 A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곧바로 2021. 8.경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21. 8. 30.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21. 10.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카단11576호로 청구금액 517,252,855원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 피고 A와 피고 C 사이에 이루어진 물품거래는 그 기간이 2달 남짓에 불과하고 횟수도 2회뿐이며 그 규모 역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전의 거래규모에 비해 매우 작았다. 피고 C이 적극적으로 피고 B에게 담보 제공을 요구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후 거래규모가 급격히 감소한 사실로 미루어볼 때 피고 C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미 피고 A, B의 변제력이 악화되어 물품거래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 C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B의 채무초과상태를 알지 못하여 사해의사가 없었기에 선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증명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위와 같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위 나.항의 ②항 사실과 (다)항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B의 유일한 재산이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20.자 L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286,800,000원의 근저당권, 2018. 3. 26.자 주식회사 K 명의의 채권최고액 114,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 C이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것인바,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하였다면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C에게 229,401,574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 및 확정되었으나,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인천지방법원 2022카단104371호)을 받고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단807696호, 같은 법원 2022카단811066호)을 받음에 따라 피고 C이 이 사건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98,621,01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원상회복으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배당금 지급채권 중 98,621,010원을 양도하고,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최유나

별지

1)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시가 654,000,000원에서 1순위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J의 피담보채권액 257,432,807원(채권최고액 286,800,000원)과 2순위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K의 피담보채권액 122,824,328원(채권최고액 114,000,000원)을 공제한 282,567,193원이 된다.